

신천역 한라비발디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건본주택 운영안내

- 신천역 한라비발디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alla-shincheon.co.kr/>)와 건본주택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http://halla-shincheon.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건본주택 관람 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는 관람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장 전 사전예약 확인 및 건본주택 방문 기록을 위한 QR 코드 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 사업주체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절차 및 위생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자격 확인용 서류 제출 및 분양 계약 체결 목적에 한하여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건본주택 내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천역 한라비발디 상담전화(1644-001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30.**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 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 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합니다.)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 발생된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입주자자택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자택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 / 1·2순위)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택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청약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alla-shincheo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시흥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합니다.)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2022.01.10(월)	2022.01.11.(화) / 해당지역 (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2022.01.12.(수) / 기타지역	2022.01.13(목)	2022.01.19.(수)	2022.02.07.(월) ~ 2022.02.11.(금)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개별조회 가능	건본주택 계약(10:00~16:00)
장소	▪ 건본주택(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건본주택(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5:3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호(2021.12.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 시흥시 신천동 8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7층, 6개동 총 1,297세대(특별공급 5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527세대(일반[기관추천] 91세대, 다자녀가구 126세대, 노부모부양 35세대, 신혼부부 184세대, 생애최초 91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5년 09월말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 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 대 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 대 수	저 우선배정 세 대 수
					주 거 전용면적	주 거 공용면적	소계					기 관 추 천	다자녀 가 구	노부모 부 양	신 혼 부 부	생 애 최 초	소 계		
민영 주택	2021-000992	01	084.7050A	84A	84.7050	33.0865	117.7915	52.9926	170.7841	26.0342	344	34	34	10	68	34	180	164	8
		02	084.8137B	84B	84.8137	33.4964	118.3101	53.0604	171.3705	26.0676	69	6	6	2	13	6	33	36	2
		03	084.7324C	84C	84.7324	34.2704	119.0028	53.0097	172.0125	26.0427	282	28	28	8	56	28	148	134	6
		04	084.0616D	84D	84.0616	34.8040	118.8656	52.5900	171.4556	25.8365	118	11	11	3	23	11	59	59	3
		05	084.5859E	84E	84.5859	33.7107	118.2966	52.9180	171.2146	25.9976	123	12	12	3	24	12	63	60	3
		06	111.6914A	111A	111.6914	43.1159	154.8073	69.8756	224.6829	34.3286	141	-	14	4	-	-	18	123	3
		07	111.9114B	111B	111.9114	41.9260	153.8374	70.0132	223.8506	34.3962	133	-	13	3	-	-	16	117	3
		08	111.8323C	111C	111.8323	40.8988	152.7311	69.9637	222.6948	34.3719	43	-	4	1	-	-	5	38	1
		09	111.6752D	111D	111.6752	43.1035	154.7787	69.8654	224.6441	34.3236	44	-	4	1	-	-	5	39	1
	합계										1,297	91	126	35	184	91	527	770	30

- 대지 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공부상 면적(등기 면적)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 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 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인쇄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타입 (약식 표기)	공 급 세대수	총 구분	해 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차 (2022.10.21)	2회차 (2023.06.21)	3회차 (2024.02.21)	4회차 (2024.10.21)	5회차 (2025.01.21)	6회차 (2025.05.21)	입주지정일
84A	344	1	6	199,683,140	427,816,860	627,50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188,250,000
		2	8	199,683,140	436,916,860	636,600,000	63,660,000	63,660,000	63,660,000	63,660,000	63,660,000	63,660,000	63,660,000	190,980,000
		3	8	199,683,140	443,916,860	643,600,000	64,360,000	64,360,000	64,360,000	64,360,000	64,360,000	64,360,000	64,360,000	193,080,000
		4	8	199,683,140	450,916,860	650,60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195,180,000
		5	8	199,683,140	457,916,860	657,60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65,760,000	197,280,000
		6~10	40	199,683,140	464,916,860	664,600,000	66,460,000	66,460,000	66,460,000	66,460,000	66,460,000	66,460,000	66,460,000	199,380,000
		11~20	80	199,683,140	471,916,860	671,60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201,480,000
		21~30	80	199,683,140	485,916,860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31~40	78	199,683,140	492,916,860	692,600,000	69,260,000	69,260,000	69,260,000	69,260,000	69,260,000	69,260,000	69,260,000	207,780,000
		41층이상	28	199,683,140	499,916,860	699,60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209,880,000
84B	69	2	1	199,942,029	431,657,971	631,60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63,160,000	189,480,000
		3	2	199,942,029	438,657,971	638,600,000	63,860,000	63,860,000	63,860,000	63,860,000	63,860,000	63,860,000	63,860,000	191,580,000
		4	2	199,942,029	445,657,971	645,60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193,680,000
		5	2	199,942,029	452,657,971	652,60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65,260,000	195,780,000
		6~10	10	199,942,029	459,657,971	659,60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65,960,000	197,880,000
		11~20	20	199,942,029	466,657,971	666,600,000	66,660,000	66,660,000	66,660,000	66,660,000	66,660,000	66,660,000	66,660,000	199,980,000
		21~30	20	199,942,029	480,657,971	680,60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204,180,000
		31~37	12	199,942,029	487,657,971	687,600,000	68,760,000	68,760,000	68,760,000	68,760,000	68,760,000	68,760,000	68,760,000	206,280,000
84C	282	1	6	199,744,681	410,255,319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	6	199,744,681	419,155,319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185,670,000
		3	6	199,744,681	426,055,319	625,80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187,740,000
		4	6	199,744,681	432,855,319	632,60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189,780,000
		5	6	199,744,681	439,755,319	639,50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191,850,000
		6~10	30	199,744,681	446,555,319	646,30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193,890,000
		11~20	60	199,744,681	453,455,319	653,20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195,960,000
		21~30	60	199,744,681	467,155,319	666,90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200,070,000
		31~40	60	199,744,681	474,055,319	673,80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202,140,000
		41층이상	42	199,744,681	480,855,319	680,60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204,180,000

타입 (약식 표기)	공 급 세 대 수	총구분	해 당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차 (2022.10.21)	2회차 (2023.06.21)	3회차 (2024.02.21)	4회차 (2024.10.21)	5회차 (2025.01.21)	6회차 (2025.05.21)	입주지정일
84D	118	2	3	198,161,017	425,738,983	623,900,000	62,390,000	62,390,000	62,390,000	62,390,000	62,390,000	62,390,000	62,390,000	187,170,000
		3	3	198,161,017	432,638,983	630,80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63,080,000	189,240,000
		4	3	198,161,017	439,438,983	637,60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191,280,000
		5	3	198,161,017	446,338,983	644,50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193,350,000
		6~10	15	198,161,017	453,138,983	651,300,000	65,130,000	65,130,000	65,130,000	65,130,000	65,130,000	65,130,000	65,130,000	195,390,000
		11~20	30	198,161,017	460,038,983	658,20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197,460,000
		21~30	30	198,161,017	473,738,983	671,900,000	67,190,000	67,190,000	67,190,000	67,190,000	67,190,000	67,190,000	67,190,000	201,570,000
		31~40	23	198,161,017	480,638,983	678,80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67,880,000	203,640,000
		41층이상	8	198,161,017	487,438,983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84E	123	1	2	199,398,374	410,601,626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	2	199,398,374	419,501,626	618,90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61,890,000	185,670,000
		3	3	199,398,374	426,401,626	625,80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62,580,000	187,740,000
		4	3	199,398,374	433,201,626	632,60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189,780,000
		5	3	199,398,374	440,101,626	639,50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63,950,000	191,850,000
		6~10	15	199,398,374	446,901,626	646,30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193,890,000
		11~20	30	199,398,374	453,801,626	653,20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65,320,000	195,960,000
		21~30	30	199,398,374	467,501,626	666,90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66,690,000	200,070,000
		31~40	28	199,398,374	474,401,626	673,80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67,380,000	202,140,000
		41층이상	7	199,398,374	481,201,626	680,60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68,060,000	204,180,000
111A	141	1	3	263,297,872	501,202,128	764,50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229,350,000
		2	3	263,297,872	512,402,128	775,70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232,710,000
		3	3	263,297,872	521,002,128	784,30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235,290,000
		4	3	263,297,872	529,502,128	792,80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237,840,000
		5	3	263,297,872	538,102,128	801,40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240,420,000
		6~10	15	263,297,872	546,702,128	810,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43,000,000
		11~20	30	263,297,872	555,302,128	818,60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245,580,000
		21~30	30	263,297,872	572,402,128	835,70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250,710,000
		31~40	30	263,297,872	581,002,128	844,30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253,290,000
		41층이상	21	263,297,872	589,602,128	852,90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255,870,000

타입 (약식 표기)	공 급 세 대 수	층구분	해 당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차 (2022.10.21)	2회차 (2023.06.21)	3회차 (2024.02.21)	4회차 (2024.10.21)	5회차 (2025.01.21)	6회차 (2025.05.21)	입주지정일
111B	133	1	2	263,819,549	500,680,451	764,50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229,350,000
		2	2	263,819,549	511,880,451	775,70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77,570,000	232,710,000
		3	3	263,819,549	520,480,451	784,30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235,290,000
		4	3	263,819,549	528,980,451	792,80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79,280,000	237,840,000
		5	3	263,819,549	537,580,451	801,40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240,420,000
		6~10	15	263,819,549	546,180,451	810,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43,000,000
		11~20	30	263,819,549	554,780,451	818,60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81,860,000	245,580,000
		21~30	30	263,819,549	571,880,451	835,70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250,710,000
		31~40	30	263,819,549	580,480,451	844,30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253,290,000
		41층이상	15	263,819,549	589,080,451	852,90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255,870,000
111C	43	2	1	263,627,907	532,972,093	796,600,000	79,660,000	79,660,000	79,660,000	79,660,000	79,660,000	79,660,000	79,660,000	238,980,000
		3	1	263,627,907	541,772,093	805,40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241,620,000
		4	1	263,627,907	550,472,093	814,10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244,230,000
		5	1	263,627,907	559,272,093	822,90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246,870,000
		6~10	5	263,627,907	567,972,093	831,600,000	83,160,000	83,160,000	83,160,000	83,160,000	83,160,000	83,160,000	83,160,000	249,480,000
		11~20	10	263,627,907	576,772,093	840,400,000	84,040,000	84,040,000	84,040,000	84,040,000	84,040,000	84,040,000	84,040,000	252,120,000
		21~30	10	263,627,907	594,272,093	857,90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257,370,000
		31~40	10	263,627,907	602,972,093	866,60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259,980,000
		41층이상	4	263,627,907	611,772,093	875,40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262,620,000
111D	44	1	1	263,250,000	506,250,000	769,50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230,850,000
		2	1	263,250,000	517,450,000	780,700,000	78,070,000	78,070,000	78,070,000	78,070,000	78,070,000	78,070,000	78,070,000	234,210,000
		3	1	263,250,000	526,050,000	789,30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78,930,000	236,790,000
		4	1	263,250,000	534,550,000	797,80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79,780,000	239,340,000
		5	1	263,250,000	543,150,000	806,40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80,640,000	241,920,000
		6~10	5	263,250,000	551,750,000	815,0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244,500,000
		11~20	10	263,250,000	560,350,000	823,600,000	82,360,000	82,360,000	82,360,000	82,360,000	82,360,000	82,360,000	82,360,000	247,080,000
		21~30	10	263,250,000	577,450,000	840,700,000	84,070,000	84,070,000	84,070,000	84,070,000	84,070,000	84,070,000	84,070,000	252,210,000
		31~40	10	263,250,000	586,050,000	849,300,000	84,930,000	84,930,000	84,930,000	84,930,000	84,930,000	84,930,000	84,930,000	254,790,000
		41층이상	4	263,250,000	594,650,000	857,90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85,790,000	257,37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인지세,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 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 공동 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공급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 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부시 연체료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커뮤니티시설 고려대상에서 제외 및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공급 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 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나.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은 사업당사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 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 기관으로 대출 신청(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 대출 규제 대상자,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차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대출 은행 미 선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명기된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 금액은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서류 검수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본불가)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 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명의변경, 기 납부금액의 환불 등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84E	111A	111B	111C	111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2	6	3	3	-	-	-	-	21
	장기복무 제대군인	7	1	6	2	3	-	-	-	-	19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7	1	6	2	2	-	-	-	-	18
	중소기업 근로자	7	1	5	2	2	-	-	-	-	17
	장애인	6	1	5	2	2	-	-	-	-	1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흥시 · 경기도(50%)	17	3	14	6	6	7	7	2	2	64
	서울시 · 인천시(50%)	17	3	14	5	6	7	6	2	2	6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2	8	3	3	4	3	1	1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68	13	56	23	24	-	-	-	-	184
생애최초 특별공급		34	6	28	11	12	-	-	-	-	91
합계		180	33	148	59	63	18	16	5	5	52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 가능),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 주 택 요 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 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분</th><th>시흥시 및 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table>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9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 상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 요건 등 우선 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자격요건	- 청약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26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 상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가 우선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를 우선공급,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합니다. (예시) 시흥시에서 공급하는 경우 -시흥시 및 경기도: 50%,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50% → 시흥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를 우선으로 선정)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아니한 기간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도·특별자치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한 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18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 상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 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한데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 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35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 상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9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 상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청약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격요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무주택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상 2020.12.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인 가구 (적용 전용면적 60㎡이하 해당)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니 유의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자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75%) / 추천제(25%), 가정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정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정제 (30%) / 추천제(7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정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 사실 증명원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자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검색대상: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됩니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 무허가 건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으로 확인)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이고,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이며, 주택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합니다.
 - ②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합니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 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구분	내용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 1년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합니다.)**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 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21.11.16.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릅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1.10(월) (청약Home 인터넷: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바일 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위치: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등의 방식/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시흥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2022.01.11(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바일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시흥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2022.01.12(수) 09:00~17:30		
	2순위	2022.01.13(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09:00~15:30 코로나 19로 인한 은행 단축 운영으로 은행 확인 후 방문)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 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 공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 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시: 2022.01.19.(수)	일시: 2022.02.07.(월) ~ 2022.02.11.(금) [10:00 ~ 16:00]
일반공급	1순위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견본주택(경기 시흥시 배곧동 270) ※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등의 방식/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예정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별도 공고 및 당첨자 선정을 통해 분양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1.19.(수) ~ 2022.01.28.(금) (10일간)	
인 터 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휴 대 폰	대 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2.01.19.(수)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및 자격검수 일정

당첨구분	서류제출 대상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등
당첨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체	• 일시: 2022. 01. 20.(목) ~ 2022. 01. 28.(금) [10:00 ~ 16:00] • 장소: 건본주택(경기 시흥시 배곧동 270) •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신천역 한라비발디 홈페이지 방문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제출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 1차 제출자 : 각 타입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순번 (1차대상 순번은 추후 홈페이지 등 공지할 예정) • 1차 제출대상자 이후 순번자는 별도 통보예정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게 업무진행 관련(자격검수, 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 안내와 관련하여, 청약 시 등록한 연락처(전화, 주소 등)를 기준으로 안내드리오니 변동이 있으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께서는 사업주체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연락받지 못한(부재, 번호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 공급 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합니다. 본인 신청 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조회 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생년월일부터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이전 자녀 출산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본인: 만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조회 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본인: 혼인 및 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발 급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생년월일부터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 상에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청약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아래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일반공급 당첨자 (가정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가정제 부양가족 산정 시)	•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확인 제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가정제 부양가족 산정 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유학,연수,관광,단수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간 183일,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상세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주택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류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②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 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 시 작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합니다.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일반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서류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허함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확인서		• 기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군 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경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자위를 인정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추가 (해당자)		
본 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입금증	○		-	• 현장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
	수입인지(인지세)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 라 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양식 비치)
	위임장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불하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행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 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 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사항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81-583622	㈜무궁화신탁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1)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예2)101동 1403호 아무개 → 1011403아무개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계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단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 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 / 계약시	중도금(20%) / 2022.10.21	잔금(70%) / 입주지정일	
84A	12,500,000	1,250,000	2,500,000	8,750,000	확장공사 범위 등 계약 전 확인 필요
84B	11,900,000	1,190,000	2,380,000	8,330,000	
84C	13,200,000	1,320,000	2,640,000	9,240,000	
84D	14,500,000	1,450,000	2,900,000	10,150,000	
84E	12,900,000	1,290,000	2,580,000	9,030,000	
111A	19,500,000	1,950,000	3,900,000	13,650,000	
111B	19,100,000	1,910,000	3,820,000	13,370,000	
111C	17,500,000	1,750,000	3,500,000	12,250,000	
111D	18,200,000	1,820,000	3,640,000	12,74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8.12.07.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시공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새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1개소) 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사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사항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81-583624	(주)무궁화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1)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예2) 101동 1403호 아무개 → 1011403아무개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의 경우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발코니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안내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옵션품목		유상옵션 적용평형								비고	
			84A	84B	84C	84D	84E	111A	111B	111C		111D
가. 창호류	01.현관중문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미선택시 가구 날개벽 설치
나. 주방마감류	02.세라믹타일(상판12T/벽6T)+사각씽크볼		3,600,000	2,800,000	3,700,000	3,700,000	3,600,000	3,600,000	3,900,000	3,900,000	4,000,000	■ 미선택시 주방벽면은 자기질타일(300x600), 상판은 MMA 인조석, 일반 씽크볼 설치
다. 가구류	03.알파룸특화(주방팬트리+장식장)		2,300,000	-	-	-	-	-	-	3,100,000	-	■ 미선택시 일반 침실(목문)설치, 현관창고 축소(84A)
	04.드레스룸특화	벽판넬조명선반+의류관리기	2,700,000	2,500,000	2,200,000	2,300,000	2,600,000	-	-	3,000,000	2,800,000	■ 미선택시 드레스룸은 포스트타입 일반선반 설치되며 서랍장,악세사리판넬,옷걸이조명삭제
		벽판넬조명선반+의류관리기+ 슬라이딩유리도어	-	-	-	-	-	2,900,000	2,900,000	-	-	■ 미선택시 드레스룸은 포스트타입 일반선반 설치되고 서랍장, 악세사리류 삭제되며, 111A, B는 가구문 설치
	05.침실붙박이장	선택1. 반침장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84A, 84B, 84E, 111D는 침실2 적용
		선택2. 교육특화가구	1,900,000	1,900,000	1,900,000	2,400,000	2,100,000	2,300,000	2,300,000	2,500,000	2,500,000	84C, 84D, 111A, 111B, 111C는 침실3 적용
라. 가전기기	06.전기국밥(2구인덕선+1구하이라이트)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미선택시 3구 가스국밥 설치
	07.전기오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 미선택시 수납장 설치
	08.식기세척기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 미선택시 수납장 설치
	09.빌트인냉장고(TBI)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 미선택시 냉장고/감치냉장고 공간이 마련되며, 상부장이 설치되고 84A, 111C는 냉장고 옆 수납장이 삭제, 84B, C, D, E, 111A, B, D는 상하부장이 축소
	10.빌트인감치냉장고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마.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1.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300,000	3,300,000	3,300,000	3,600,000	3,400,000	-	-	-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5,900,000	6,100,000	6,300,000	6,200,000	6,400,000	-	-	-	-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알파룸)		7,200,000	-	-	-	-	-	-	-	-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		-	-	-	-	-	4,500,000	4,600,000	4,700,000	4,7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2,3)		-	-	-	-	-	7,500,000	7,300,000	7,300,000	7,4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	-	-	-	-	8,6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바. 기타	12.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경동나비엔)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 미선택시 일반 전열교환기 설치
	13.특화방충망(안전망+미세먼지망)		3,800,000	3,600,000	4,000,000	4,600,000	4,000,000	4,600,000	4,600,000	4,400,000	4,700,000	■ 적용부위(개수):거실(2), 침실(각1),알파룸(1), 주방(1), 발코니(각1), 드레스룸(1), 측면창(1) ■ 실외기실 그릴창은 일반방충망 적용
	14.열차단필름		1,900,000	1,900,000	2,300,000	2,700,000	2,300,000	2,800,000	2,800,000	2,400,000	2,900,000	■ 외부면하는 전면/측면 창유리 적용 (단, 침실1은 침실1발코니에 적용)

■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22-10-21	입주지정일
유상옵션대금 납부비율	10%	20%	7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대금	중소기업은행	504-071220-01-019	주식회사 다우개발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관련 유의사항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입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옵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매립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실내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기 응축수 드레인 배관이 발코니 또는 세탁실에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설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세대환기장치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드레스룸 내 선반은 일반 포스트타입 선반이 설치되며 벽판넬, 서랍장, 옷걸이조명, 악세서리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의 경우 의류관리기가 함께 시공되며, 이 경우 옵션가격은 의류관리기 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의류관리기 설치 위치는 84A, 84C, 111C(화장대 옆), 84B, 84D, 84E, 111D(드레스룸 안쪽 선반 위치), 111A, 111B는 드레스룸 벽체에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84A, 84C, 111C는 화장대 옆 수납장이 설치되며 84B, 84D, 84E, 111A, 111B, 111D는 수납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내 유리 슬라이딩도어는(111A, 111B) 드레스룸 특화 옵션에 포함됩니다.
- 의류관리기 색상은 111A, 111B, 111D는 차콜칼라이며, 84A, 84B, 84C, 84D, 84E, 111C는 화이트칼라로 적용됩니다.
- 빌트인냉장고 또는 빌트인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 상, 하부장이 줄어듭니다.(84B, 84C, 84D, 84E, 111A, 111B, 111D)
- 빌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측면 키큰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84A)
- 빌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측면 키큰장 1개소는 설치되지 않습니다.(111C)
- 옵션 미선택시 기본 냉장고장과 김치냉장고장 설치공간은 입주자 가전의 종류에 따라 돌출될 수 있습니다.(장 깊이: 약 690mm내외)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상판과 벽 세라믹다일 옵션 선택시 타일의 패턴과 색상,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알파룸특화 유상옵션(84A, 111C) 선택 시, 기본형 알파룸에 제공되는 온도조절기 및 환기디퓨저가 삭제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에서 계약 체결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에서 시공 예정이며,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는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 닥 재	<온돌마루(갈레반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인조 대리석> 현관, <온돌마루> 침실,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바닥 난방,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 아트월(타일), 주방벽 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단열 + 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 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 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 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주방가전기기 일체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설치관련),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대 내 가구 일체,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창 호 및 기타사항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 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E	111A	111B	111C	111D
금액	33,500,000	33,200,000	34,900,000	33,800,000	33,600,000	46,000,000	45,700,000	44,000,000	44,60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수분양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제4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별지1 서식)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이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택 청약 및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습니.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신축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주식회사 전북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자 입주자 명의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 본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항,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 의거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시설은 시흥시청이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운영이 확정되더라도 예산확보 및 운영자 선정 등의 관련 절차 및 시설 인수인계 등의 일정에 따라 개원 시점이 입주 시점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운영과 관련하여, 원생 통학안전을 위해 단지 내 통학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 본 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시흥신일초등학교로 배치 예정임
 - 중 학 교: 소래중학군 내 학교(대흥중, 소래중, 신천중, 시흥은행중, 은계중)로 배치 예정임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군)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 관련

- 사업지구 내 소공원 2개소(은행이2, 은행이3) 및 어린이공원 1개소(은행이4)의 조성 계획은 해당 청의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 중에 있으며, 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공원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조성될 예정입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계획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3동, 105동, 어린이집)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3동, 105동, 어린이집), 지하1층(101동 쉼터, 104동 PIT), 지하2층(101동 PIT, 104동 PIT), 지하3층(101동 PIT, 104동 PIT)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2025년 9월말 경(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담보 존속 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 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대지 및 대지여건

- 분양안내 모형 및 분양안내 책자 등의 사업지 주변 도로계획은 은행2지구 전체 개발 완료 시의 장기 계획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시기에는 단기 계획안으로 추진 될 예정이나 당 사업지 남측의 특별1구역 개발 지연 시 특별1구역의 북측, 서측과 면한 도로 부분의 차선 및 폭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인허가에 따라 도로 형태 및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인접 건물 등의 일조 침해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반사판, 반사경 등)이 당 아파트 각 동 옥상(지붕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장기안(남동측 : 폭 20M, 남서측 : 폭 21.4M)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버스정류장은 시흥대로 양측2개소, 은행로 양측2개소로 계획되어있으며, 시흥시의 공용버스노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지 주변 공용버스 운행이 변경 및 지연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교육시설로는 금모래초(북측: 약470M), 소래고(북측: 약13M), 소래중(북동측: 약 80M), 웃터골초(북동측: 약 450M), 신일초(남측: 약145M), 검바위초(남서측: 440M)가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공원시설로는 은행근린공원(북측: 약370M), 은계중앙공원(북동측: 약430M), 은행길담소공원(동측: 약250M), 검바위 하늘공원(동남측: 약400M), 백제공원(남측: 약220M), 신일공원(남측: 420M), 산호어린이공원(남서측: 약290M), 북은자리어린이공원(서측: 약35M), 북음공원(서측: 약90M), 동지공원(서측: 약200M), 현진공원(북서측: 약450M)이 위치해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준공 시 확정 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 당 공급 면적과 대지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 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 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형용 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각 동 출입구(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관제 설비는 입주자 전용이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는 지상에 별도 구획되어 있습니다.
- 마감재 두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석재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 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 별로 상이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 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TV설비용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충 세대는 운동 시설, 휴게소,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이용하는 입주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0호에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대시설: 주차장(지하1층~지하3층), 관리사무소[1개소]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2개소], 배드민턴장[1개소], 체력단련장[1개소], 다목적홀(실내체육관)[1개소], 어린이집[1개소], 경로당[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피트니스[1개소], 골프연습장[1개소(일반타석 13개 포함)], 사우나[1개소], 주민회의실[1개소], 동호회실[1개소], 스터디룸[1개소], 주민카페[1개소], 게스트하우스[2개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설비가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및 주민공동시설은 103동, 104동 하부에, 다목적홀은 106동 지하에 인접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인접 지하 2층에 저수조, 펌프실, 기계실 등이 위치하며, 장비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인접 지하 2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장비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 난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동별 1개소씩 6개소 설치, 근린생활시설 별도 1개소 설치), 흡연부스(102동 1층 1개소, 105동 106동 인근 1층 1개소) 등이 노출되어

-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인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차도,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택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주차장은 지하 1, 2, 3층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별도 구획 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 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유효 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폭은 전층(지하1층~지하3층) 6~7m이고, 유효 높이는 통로구간 2.3m(지하1층만 2.7m: 택배차량 통행가능), 주차구간 2.1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이사 차량은 단지 내 지상 비상소방차로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 시 각 동의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용 D/A, 제연헬륨 D/A 등의 지상 돌출물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상가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탑승위치, 주동 입면 등)은 사용감사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본 주택에 미건립된 세대(맞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건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 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 배수 공법 및 인공 지반 우수 처리를 위해 주차장 내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 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주방 및 욕실환기의 직배기 및 전열교환기 급배기구에 설치에 따라 건물입면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화장실 PD내부에 우수 드레인 입상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에 따라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뒤편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 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개수대 밑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로 인해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감지기,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부욕 실은 바닥 난방으로 인하여 단차가 20mm이내 입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화장실 천정 점검구 개수 및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 (1개소) 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시공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화재 발생 시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는 곳이므로, 물건적재 및 기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파로티 최하층세대는 하향식사다리 대신 안방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출입문은 철재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 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이를 다른 재질의 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세대는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위치,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이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소방법에 따라 헤드 위치나 개수가 변경됩니다. 또한 각 발코니에 설치되는 축벽형 헤드에 따라 각방의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쪽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렌지후드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는 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일부 배관 및 계량기가 노출되며, 도시가스 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환기디퓨저 및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경우 렌지후드 및 욕실환풍 덕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유닛 장비 및 덕트는 실외기실 또는 세탁기실 천장에 노출 시공되고 덕트와 연결된 각 실의 디퓨저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유닛 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 등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선택해야하며, 설치 세대 및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이 다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은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됨. 또한 옵션 에어컨설치 시 드레인 배관에 따라 안방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접하는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마다 다르고 창호의 유무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층당 2세대 조합은 2대, 3세대 조합은 3대, 5세대 조합은 5대가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인접하여 시공되며,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모형 및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마감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아파트동 및 부대복리동 등의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전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소방시설물은 견본주택용 화재대비용이며, 본공사 시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내 창호는 골조와 이격으로 인해 창문 개폐 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고, 창호 주위 도배지 일부 탈락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주택형 111A, B, C, D의 침실1 및 침실1의 드레스룸 난방코일은 침실1의 온도조절기 한 개로 제어됩니다.
- 욕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자동식소화기의 제품 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중 부부욕실에만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분양보증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서 번호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47,776,640,000	제01292021-101-0014500호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 中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등을 위한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관련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서울시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2. 신청자: 현대유개발 3. 대지위치: 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83-6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 <td>1. 방음충격음 차단성능</td><td>★★★★</td></tr> <tr> <td>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td><td>*</td></tr> <tr> <td>3. 세대 간 공역의 차음성능</td><td>★★★★</td></tr> <tr> <td>4. 공중음(노출음, 활동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 <td>5. 차음성 공배수 소음</td><td>★★★★</td></tr>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 <td>1. 내구성</td><td>★★</td></tr> <tr> <td>2. 가연성</td><td>★★</td></tr> <tr> <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td>*</td></tr> <tr> <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 <td>1. 기존 내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해당없음</td></tr> <tr> <td>2. 과도한 개발 방지</td><td>해당없음</td></tr> <tr> <td>3. 토양오염방지 대책</td><td>★★★★</td></tr> <tr> <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해당없음</td></tr> <tr> <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 <td>6. 에너지 소비효율 등 관리사항 등</td><td>★★</td></tr> <tr> <td>7. 전·차량전파의 이용</td><td>*</td></tr> <tr> <td>8. 친환경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 <td>9. 온수공급을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금지</td><td>*</td></tr> <tr> <td>10. 환경친화적 제품(EPP)의 사용</td><td>★★★★</td></tr> <tr> <td>11. 폐기물 처리의 사용</td><td>★★</td></tr> <tr> <td>12. 자원순환 재료의 사용</td><td>★★</td></tr> <tr> <td>13. 유해물질 저장 재료의 사용</td><td>★★</td></tr> <tr> <td>14. 녹색건축재료의 사용 비율</td><td>★★★★</td></tr> <tr> <td>15. 폐물처리용량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 <td>16. 동물관리</td><td>★★</td></tr> <tr> <td>17. 식물 및 동물친화적 이용</td><td>★★</td></tr> <tr> <td>18. 물수용 기기 사용</td><td>★★★★</td></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 <td>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완결</td><td>★★★★</td></tr> <tr> <td>2. 교통편의성 향상</td><td>★★★★</td></tr> <tr> <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확충</td><td>*</td></tr> <tr> <td>4. 생활환경의 미관성</td><td>*</td></tr> <tr> <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 <td>6. 생활·휴식공간 조성 및 쾌적성 제공</td><td>★★★★</td></tr> <tr> <td>7. 자원의 재활용 제공</td><td>★★★★</td></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 <td>9. 단위세대와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 <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 <td>11. 주민자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존립추진</td><td>*</td></tr> <tr> <td>12. 세대 내 방화 확보</td><td>*</td></tr> <tr> <td>13. 총면적의 2% 이상</td><td>*</td></tr> <tr> <td>14. 방화안전 문폐</td><td>*</td></tr> </table>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 <td>1. 화재 등 안전성</td><td>*</td></tr> <tr> <td>2. 화재예방</td><td>*</td></tr> <tr> <td>3. 내화성능</td><td>*</td></tr> <tr> <td>4. 수평대난기리</td><td>★★★★</td></tr> <tr> <td>5. 벽도 및 계단 구조재</td><td>*</td></tr> <tr> <td>6. 피난통로</td><td>*</td></tr> </table>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방음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공역의 차음성능	★★★★	4. 공중음(노출음, 활동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차음성 공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내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개발 방지	해당없음	3. 토양오염방지 대책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효율 등 관리사항 등	★★	7. 전·차량전파의 이용	*	8. 친환경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수공급을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EPP)의 사용	★★★★	11. 폐기물 처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재료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재료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사용 비율	★★★★	15. 폐물처리용량의 보관시설 설치	★★★★	16. 동물관리	★★	17. 식물 및 동물친화적 이용	★★	18. 물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완결	★★★★	2. 교통편의성 향상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확충	*	4. 생활환경의 미관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생활·휴식공간 조성 및 쾌적성 제공	★★★★	7. 자원의 재활용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와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주민자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존립추진	*	12. 세대 내 방화 확보	*	13. 총면적의 2% 이상	*	14. 방화안전 문폐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등 안전성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대난기리	★★★★	5. 벽도 및 계단 구조재	*	6. 피난통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인증 개요】 <table border="1"> <tr> <td>인증대상</td><td>서울시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td></tr> <tr> <td>인증주</td><td>2021년 9월 30일</td></tr> <tr> <td>인증(예정)일</td><td>2021년 9월 30일</td></tr> <tr> <td>주 소</td><td>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83-6</td></tr> <tr> <td>용 수</td><td>지하 1층, 지상 47층 / 1297세대</td></tr> <tr> <td>면 적</td><td>244,397.99㎡</td></tr> <tr> <td>인증물의 주안 품도</td><td>공동주택 및 부대시설</td></tr> <tr> <td>발 기 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able> 【인증 개요】 <table border="1"> <tr> <td>인증번호</td><td>G-5620-2021-1235-7</td></tr> <tr> <td>인증기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 <td>유효기간</td><td>2021.11.26. ~ 사용승인일</td></tr> </table> 【인증 등급】 <table border="1"> <tr> <td>인증등급</td><td>우수등급(공동주택)</td></tr> <tr> <td>인증기준</td><td>녹색건축 인증기준</td></tr> <tr> <td></td><td>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td></tr> <tr> <td></td><td>환경부 고시 제2021-66호</td></tr> </tabl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 ★ 2021년 11월 26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대상	서울시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인증주	2021년 9월 30일	인증(예정)일	2021년 9월 30일	주 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83-6	용 수	지하 1층, 지상 47층 / 1297세대	면 적	244,397.99㎡	인증물의 주안 품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발 기 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번호	G-5620-2021-123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11.26. ~ 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table border="1"> <tr> <td>인증대상</td><td>서울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td></tr> <tr> <td>인증주</td><td>2021.09.30</td></tr> <tr> <td>용 수</td><td>지하 1층 / 지상 47층</td></tr> <tr> <td>면 적</td><td>244,397.99㎡</td></tr> <tr> <td>인증물의 주안 품도</td><td>공동주택</td></tr> <tr> <td>발 기 지</td><td>(주)에스이케이건축사사무소</td></tr> </table> 【인증 개요】 <table border="1"> <tr> <td>인증번호</td><td>21-4-4-4-0386</td></tr> <tr> <td>발 기 지</td><td>에스이케이</td></tr> <tr> <td>인증기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 <td>유효기간</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 <td>주 소 기간</td><td>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후 1년</td></tr> </table> 【인증 등급】 <table border="1"> <tr> <td>인증등급</td><td>1등급</td></tr> </tabl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74.5 에너지소비효율(2등급) 64.7 에너지소비효율(3등급) 54.8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44.8 에너지소비효율(5등급) 34.8 에너지소비효율(6등급) 24.8 에너지소비효율(7등급) 14.8 에너지소비효율(8등급) 4.8 에너지소비효율(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5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6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7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8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9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0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1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2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3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4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5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6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7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8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19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0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1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2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3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4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5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6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7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8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29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0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1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2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3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4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5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6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7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8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39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0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1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2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3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4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5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6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0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1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2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3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4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5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6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7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8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79등급) 0.8 에너지소비효율(480등급) 0	인증대상	서울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인증주	2021.09.30	용 수	지하 1층 / 지상 47층	면 적	244,397.99㎡	인증물의 주안 품도	공동주택	발 기 지	(주)에스이케이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1-4-4-4-0386	발 기 지	에스이케이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 소 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인증등급	1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방음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공역의 차음성능	★★★★																																																																																																																																																																	
4. 공중음(노출음, 활동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차음성 공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내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개발 방지	해당없음																																																																																																																																																																	
3. 토양오염방지 대책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효율 등 관리사항 등	★★																																																																																																																																																																	
7. 전·차량전파의 이용	*																																																																																																																																																																	
8. 친환경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수공급을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EPP)의 사용	★★★★																																																																																																																																																																	
11. 폐기물 처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재료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재료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사용 비율	★★★★																																																																																																																																																																	
15. 폐물처리용량의 보관시설 설치	★★★★																																																																																																																																																																	
16. 동물관리	★★																																																																																																																																																																	
17. 식물 및 동물친화적 이용	★★																																																																																																																																																																	
18. 물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완결	★★★★																																																																																																																																																																	
2. 교통편의성 향상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확충	*																																																																																																																																																																	
4. 생활환경의 미관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생활·휴식공간 조성 및 쾌적성 제공	★★★★																																																																																																																																																																	
7. 자원의 재활용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와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주민자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존립추진	*																																																																																																																																																																	
12. 세대 내 방화 확보	*																																																																																																																																																																	
13. 총면적의 2% 이상	*																																																																																																																																																																	
14. 방화안전 문폐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등 안전성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대난기리	★★★★																																																																																																																																																																	
5. 벽도 및 계단 구조재	*																																																																																																																																																																	
6. 피난통로	*																																																																																																																																																																	
인증대상	서울시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인증주	2021년 9월 30일																																																																																																																																																																	
인증(예정)일	2021년 9월 30일																																																																																																																																																																	
주 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83-6																																																																																																																																																																	
용 수	지하 1층, 지상 47층 / 1297세대																																																																																																																																																																	
면 적	244,397.99㎡																																																																																																																																																																	
인증물의 주안 품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발 기 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번호	G-5620-2021-123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11.26. ~ 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인증대상	서울 은평2지구 B블록 공동주택																																																																																																																																																																	
인증주	2021.09.30																																																																																																																																																																	
용 수	지하 1층 / 지상 47층																																																																																																																																																																	
면 적	244,397.99㎡																																																																																																																																																																	
인증물의 주안 품도	공동주택																																																																																																																																																																	
발 기 지	(주)에스이케이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1-4-4-4-0386																																																																																																																																																																	
발 기 지	에스이케이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 소 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인증등급	1등급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과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과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공급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준공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 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다우개발”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물건은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사업으로, 해당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본 공급물건의 사용승인(준공)을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공사를 필수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이 기반시설 등 공사비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1644-0019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http://halla-shincheon.co.kr

■ 현장위치: 경기 시흥시 신천동 83-6번지 일원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